

정 관

1956년 03월 27일 제정	1987년 05월 29일 개정
1957년 11월 20일 개정	1988년 05월 28일 개정
1961년 05월 01일 개정	1989년 05월 27일 개정
1962년 08월 08일 개정	1990년 05월 26일 개정
1965년 03월 30일 개정	1991년 05월 25일 개정
1969년 11월 15일 개정	1993년 05월 22일 개정
1971년 12월 16일 개정	1996년 05월 25일 개정
1972년 12월 05일 개정	1997년 05월 31일 개정
1974년 05월 14일 개정	1998년 05월 30일 개정
1974년 06월 22일 개정	1999년 05월 29일 개정
1975년 05월 14일 개정	2000년 05월 27일 개정
1976년 01월 14일 개정	2001년 05월 26일 개정
1976년 05월 08일 개정	2002년 05월 25일 개정
1978년 12월 21일 개정	2003년 05월 30일 개정
1979년 02월 26일 개정	2004년 05월 28일 개정
1980년 02월 25일 개정	2005년 05월 27일 개정
1981년 02월 25일 개정	2006년 05월 26일 개정
1981년 07월 25일 개정	2008년 05월 30일 개정
1981년 08월 26일 개정	2009년 05월 29일 개정
1981년 09월 25일 개정	2010년 05월 28일 개정
1982년 02월 25일 개정	2011년 05월 27일 개정
1982년 05월 25일 개정	2012년 05월 25일 개정
1983년 08월 31일 개정	2013년 05월 31일 개정
1983년 09월 24일 개정	2017년 03월 24일 개정
1984년 06월 20일 개정	2019년 03월 26일 개정
1985년 05월 29일 개정	2024년 03월 21일 개정
1986년 05월 30일 개정	2025년 03월 31일 개정
1987년 01월 30일 개정	2026년 03월 26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한양증권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HANYANG SECURITIES CO., LTD.로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각목의 금융투자업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중개업
다. 집합투자업
라. 투자일임업
마. 투자자문업
바. 신탁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수업무
-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업무 이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신고 후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 4 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good.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천만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육천주로 한다.

제 8 조(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 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내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로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⑥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참가적 배당우선주식 또는 비참가적 배당우선주식, 누적적 배당우선주식 또는 비누적적 배당우선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배당 방식은 제 8 조의 3 및 제 8 조의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8 조의 3(참가적 배당우선주식과 비참가적 배당우선주식)

- ① 단순참가적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② 즉시참가적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우선주식에 배당하고 잔여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한다.

③ 비참가적 배당우선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제 8 조의 4(누적적 우선배당주식과 비누적적 우선배당주식)

① 누적적 우선배당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② 비누적적 우선배당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은 다음 년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한다.

제 9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0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3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 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의 3(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1 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기준일)

- ① (삭제 2026.3.26)
- ②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4 조(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 2(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0 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

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 항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액면총액중 육백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사백억원은 제 8 조의 2 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 15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0 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 항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액면총액 중 육백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사백억원은 제 8 조의 2 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5 조(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6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1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7 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8 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 경제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4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7 조의 2 (삭 제 2026.3.26.)

제 28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 이사회

제 29 조(이사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이사에는 사내이사, 독립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를 ‘기타비상무이사’ 라 한다)를 포함한다.

③ 독립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수가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30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에서 제 1 항의 이사 중 사내이사과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31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독립이사의 임기는 2 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6 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또한 회사, 지주회사, 지주회사내 계열회사 등에서 독립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산하여 9 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제 32 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 28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3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1 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4 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의 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 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경업금지),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상법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 2 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 36 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6 조의 2(이사회 결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 사항
6.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9. 관계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전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37 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8 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험관리위원회
2. 내부통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5. 보수위원회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5 조, 제 36 조 및 제 3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9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와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상근임원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 40 조(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1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42 조(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 ①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 이상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4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⑥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3 조(감사위원의 임기)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 31 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4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45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계 산

제 46 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47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4 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8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9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0 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배당기준일은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으며,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은 직전결산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 50 조의 2(중간배당)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 462 조의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 51 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1. (준용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기타법령에 의한다.
2. (경과규정) 제 27 기 사업년도는 1982년 1월 1일부터 동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3. (경과규정) 제 25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제 27 기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로 하며, 제 26 기에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제 28 기 주주총회의 종료시, 감사의 임기는 제 27 기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4. (경과규정)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제 28 조의 변경규정은 제 27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일주의 금액에 관한 경과규정) 이 정관 제 5 조와 제 6 조의 규정은 개정상법 부칙 제 5 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회사가 주금액의 인상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병합을 위한 별도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 17 조 제 4 항 단서는 이 회사가 기업공개후 그株式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기발행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일전에 이미 발행된 우선주식에 대하여

는 정관변경에 불구하고 종전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정관 시행일 후 이 회사가 유.무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이 정관에 의하여 발행되는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특례) 이 정관 제 8 조의 2 제 5 항 삭제에 따라 부칙(1989년 5월 27일 시행) 제 2 조 (기발행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규정) 단서를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1 조, 제 13 조의 2, 제 19 조, 제 21 조, 제 24 조, 제 25 조 제 2 항 전단, 제 27 조, 제 27 조의 2, 제 28 조, 제 34 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3 조의 3 은 199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제 13 조의 2, 제 17 조 제 5 항, 제 25 조, 제 26 조 제 1 항, 제 35 조 제 2 항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 조치) 개정증권거래법 시행(2001년 4월 1일)당시 증권거래법 제 189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 33 조의 2 제 1 항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사업년도 등)

① 제 44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정관 시행일이후 시작되는 첫 번째 사업년도는 201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2014년 3월 31일 기준일자의 주주명부 폐쇄 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5 조의 2 및 제 16 조의 개정내용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회사에 제 6 장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에 관한 규정(제 6 장 감사)은 폐지한다.

제 2 조(감사위원회 변경 적용례) 이 회사에 제 6 장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① 제 34 조의 2 제 2 항, 제 47 조제 1 항 및 제 3 항 및 제 4 항 2 호, 제 48 조 본문의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변경한다.
- ② 제 35 조제 3 항 및 제 37 조제 2 항 본문의 ‘감사’를 삭제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제31조, 제34조의3의 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및 제4항 제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 3 조(감사위원 선.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 42 조의 제 4 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